

구 리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 2320호

2023년 09월 27일(수)

차 례

자치법규

- | | |
|-----------------|--|
| ○ 구리시 조례 제2139호 |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140호 |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141호 |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142호 |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143호 | 구리시 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144호 |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145호 |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146호 |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 ○ 구리시 규칙 제1079호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 | |
|----------------|--|
| ○ 구리시 훈령 제489호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공무원 관리 규정 등 3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
|----------------|--|

입법예고

- | | |
|----------------------|--------------------------------|
| ○ 구리시 공고 제2023-1707호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
|----------------------|--------------------------------|

고시공고

- | | |
|----------------------|--|
| ○ 구리시 공고 제2023-1540호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관계서류 공람 공고 |
|----------------------|--|

회람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139호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사용한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이를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녹화장려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구리시가 조성한 화단 및 화분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녹지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도시녹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제3항)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140호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리시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사용한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이를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녹화를 장려하는 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구리시가 조성한 화단 및 화분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녹지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도시녹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제4호)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 명)

구리시 조례 제2141호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음식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우수음식점”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

음식점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리 100대 맛집”, “노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구리 100대 맛집”이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4. “노포식당”이란 시에서 대를 이어 25년 이상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5.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음식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2.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우수음식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수음식점 지정)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음식점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우수음식점 지원)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식 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2. 우수음식점 지정증·표지판 제공
3.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4. 위생용품 등 지원
5. 그 밖에 우수음식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지정기준 등으로 2년에 1회 이상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음식점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

4. 우수음식점 신청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정받은 경우
5.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영업자가 현장평가, 재심사, 지정유지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우수음식점 지정증·표지판 회수
2.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④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우수음식점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우수음식점의 발굴·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우수음식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우수음식점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우수음식점 관련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과장이 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식품관련 대학 교수
3. 식품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식품관련 업체 대표
4. 요리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8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구리시 내 100대 맛집 및 노포식당 등 우수한 음식점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홍보함으로써, 구리시를 찾는 관광객 또는 시민들에게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음식점 지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나.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 다.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라.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142호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동차관리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자동차관리과장 엄 진 숙
	팀 장 직위·성명	차량등록팀장 김 종 화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서기 신은지 550-2576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23. 7. 19. 시행)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임의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동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안 제18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 등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143호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3.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조 영 훈
	팀 장 직위·성명	관광팀장 김 선 경
	담 당 자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김선경 550-8352

구리시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 용 기 준	성수기 (7~ 8월)	비수기		비 고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평 일	
오토캠핑장	사이트 1개소	30,000	30,000	24,000	1개소/1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1면의 캠핑면에 5명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3. 퇴장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가.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10,000원
 - 나.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5,000원
 -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4. 비수기 당일(6시간 미만)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할인 징수
한다. 단, 제9조에 따른 할인 적용 불가
5. 다음과 같이 장비 대여료를 징수한다.
 - 가. 이지캠핑 30,000원
 - 나. 이지바베큐 25,000원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구분	반 환 기 준		비고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선납금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전액 반환 및 선납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전액 반환 및 선납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전액 반환 및 선납금의 30% 배상
	사용 당일 취소		선납금 전액 반환 및 선납금의 50% 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선납금 전액 반환		
3. 예약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선납금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8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70% 반환
	사용 당일 취소	사용시간 이전	선납금의 50% 반환
		사용시간 이후	반환금 없음

※ 그 밖의 분쟁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환급·배상한다.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전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캠핑장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20% 인상하고 인상된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 및 구리시민이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감면율을 20%에서 30% 확대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청에 따라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환급 및 배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리시민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감면 폭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9조)
- 나. 사용료 및 환급 규정 등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함. (안 제11조의2)
- 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 등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 라. 캠핑장 사용료를 인상함. (별표 1)
- 마.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별표 2)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 명)

구리시 조례 제2144호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구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구

리시 예술인에 대하여 구리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경기도 사업계획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① 예술인 기회소득은 구리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 ②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조영훈
	팀 장 직위·성명	예술팀장 엄원용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보 유다영 550-2550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1. 제안이유

-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구리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 나.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8조)
- 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0조)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145호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제2항에 따른”을 “제34조에 따라”로, “부과·징수에 관한”을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2조 중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구리시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정책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보건정책과장 전 명 선
	팀 장 직위·성명	의약관리팀장 박 정 숙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의료기술서기 김수현 550-864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 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 2호	100	200	300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2023.3.28.)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별표(과태료 부과기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정비함. (안 제1조)
- 나. 불필요한 문구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함. (별표)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146호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3742호(2022.12.26.)와 관련하여, 구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구속될 경우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삭제 (안 제2조제4항)

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안 제9조)

- 의원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의원 출석정지 등 징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다. 준용 (안 제10조)

- 기존 제9조(준용)를 제10조(준용)로 수정

2023년 제11회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 명)

구리시 규칙 제107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2조(「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3조(「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4조(「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20세”를 “20세”로 한다.

제5조(「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황 병 진
	팀 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김 경 애
	선임주무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손아름 550-205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에 따라, 나이가 ‘만’ 으로 표기된 구리시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구리시 규칙 내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 표기를 삭제함. (안 제1조 ~ 제5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공무원직 관리 규정 등 3개 규정의 일부개정
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 명)

구리시 훈령 제48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공무원직 관리 규정 등 3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구리시 공무원직 관리 규정」의 개정) 구리시 공무원직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2조(「구리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의 개정) 구리시 시립예술
단 단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만 40세” 를 “40세” 로 한다.

제3조(「구리시 환경미화원 관리 규정」의 개정) 구리시 환경미화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 20세” 를 “20세”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만 60세” 를 “60세”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만 세)” 를 “(세)”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황 병 진
	팀 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김 경 애
	선임주무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손아름 550-205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공무원 관리 규정 등 3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1. 제안이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에 따라, 나이가 ‘만’ 으로 표기된 구리시 훈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구리시 훈령 내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 표기를 삭제함. (안 제1조 ~ 제3조)

구리시공고 제2023-1707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2023. 8. 11. 개정된 방정환도서관 명칭을 조례에 맞추어 교문도서관으로 개정함으로써 규칙 운영상 미비한 점을 바로잡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서관 명칭을 “방정환도서관”에서 “교문도서관”으로 변경함. (안 제 5조,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9. 27. ~ 2023. 10. 17.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교문도서관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90
- 전 화 : 031)550-2239 FAX : 031-550-8917
- 이메일 : purm2000@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구리시 규칙 제 호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방정환도서관”을 “교문도서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방정환”을 “교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시립도서관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 · 성명	시립도서관장 이 상 선
	팀 장 직위 · 성명	교문도서관팀장 김 경 희
	선임주무관 성명 · 전화번호	지방사서주사 이진화 550-2239

현행	개정안																																				
제5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별로 지정한 휴관일 가. ~ 나. (생략) 다. <u>방정환도서관</u>: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라.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휴관) ① -----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교문도서관</u>: -----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u>도서관 시설 및 용도</u>(제3조 관련) 1. (생략) 2. <u>방정환도서관</u>	[별표 1] <u>도서관 시설 및 용도</u>(제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u>교문도서관</u>																																				
<table><tr><th>구분</th><th>시설명</th><th>용도</th></tr><tr><td rowspan="2">자료실</td><td>어린이자료실</td><td>유아·아동 도서 비치 및 제공 아동 자율학습 공간</td></tr><tr><td>종합자료실</td><td>중학생 이상 일반도서 비치 및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멀티미디어 자료 및 정기간행물 이용, 중학생 이상 자율학 습 공간</td></tr><tr><td rowspan="2">교육·문화시설</td><td>문화교실</td><td>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운영 공간</td></tr><tr><td>동아리실</td><td>독서동아리 운영 공간</td></tr><tr><td rowspan="2">그 밖의 시설</td><td>북카페</td><td>휴식 공간</td></tr><tr><td>보존서고</td><td>이용 빈도 낮은 도서·비도서, 정기간행물 과월호 비치 공간</td></tr></table>	구분	시설명	용도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아동 도서 비치 및 제공 아동 자율학습 공간	종합자료실	중학생 이상 일반도서 비치 및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멀티미디어 자료 및 정기간행물 이용, 중학생 이상 자율학 습 공간	교육·문화시설	문화교실	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운영 공간	동아리실	독서동아리 운영 공간	그 밖의 시설	북카페	휴식 공간	보존서고	이용 빈도 낮은 도서·비도서, 정기간행물 과월호 비치 공간	<table><tr><th>구분</th><th>시설명</th><th>용도</th></tr><tr><td rowspan="2">자료실</td><td>어린이자료실</td><td>유아·아동 도서 비치 및 제공 아동 자율학습 공간</td></tr><tr><td>종합자료실</td><td>중학생 이상 일반도서 비치 및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멀티미디어 자료 및 정기간행물 이용, 중학생 이상 자율학 습 공간</td></tr><tr><td rowspan="2">교육·문화시설</td><td>문화교실</td><td>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운영 공간</td></tr><tr><td>동아리실</td><td>독서동아리 운영 공간</td></tr><tr><td rowspan="2">그 밖의 시설</td><td>북카페</td><td>휴식 공간</td></tr><tr><td>보존서고</td><td>이용 빈도 낮은 도서·비도서, 정기간행물 과월호 비치 공간</td></tr></table>	구분	시설명	용도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아동 도서 비치 및 제공 아동 자율학습 공간	종합자료실	중학생 이상 일반도서 비치 및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멀티미디어 자료 및 정기간행물 이용, 중학생 이상 자율학 습 공간	교육·문화시설	문화교실	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운영 공간	동아리실	독서동아리 운영 공간	그 밖의 시설	북카페	휴식 공간	보존서고	이용 빈도 낮은 도서·비도서, 정기간행물 과월호 비치 공간
구분	시설명	용도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아동 도서 비치 및 제공 아동 자율학습 공간																																			
	종합자료실	중학생 이상 일반도서 비치 및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멀티미디어 자료 및 정기간행물 이용, 중학생 이상 자율학 습 공간																																			
교육·문화시설	문화교실	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운영 공간																																			
	동아리실	독서동아리 운영 공간																																			
그 밖의 시설	북카페	휴식 공간																																			
	보존서고	이용 빈도 낮은 도서·비도서, 정기간행물 과월호 비치 공간																																			
구분	시설명	용도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아동 도서 비치 및 제공 아동 자율학습 공간																																			
	종합자료실	중학생 이상 일반도서 비치 및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멀티미디어 자료 및 정기간행물 이용, 중학생 이상 자율학 습 공간																																			
교육·문화시설	문화교실	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운영 공간																																			
	동아리실	독서동아리 운영 공간																																			
그 밖의 시설	북카페	휴식 공간																																			
	보존서고	이용 빈도 낮은 도서·비도서, 정기간행물 과월호 비치 공간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회 원 증
(앞 면)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증
Library One Card

2.4cm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7cm

책 이 음

회원번호
성 명

(뒷 면)

책이음카드 이용안내

- 대출도서는 1권당 5권, 대출기간은 15일입니다.
- 반납지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합니다.
- 자료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카드는 타인에서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발급도서관 : 구리시립도서관 (구리시립작은도서관)
*전화 : 031)550-2936(인창)550-8325(토평)
550-2593 (방정환) 550-8999(갈매)
*홈페이지 : <http://www.gurilib.go.kr>

85mm×54mm(PVC카드190g/m²)

[별지 제3호서식]

회 원 증
(앞 면)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증
Library One Card

2.4cm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7cm

책 이 음

회원번호
성 명

(뒷 면)

책이음카드 이용안내

- 대출도서는 1권당 5권, 대출기간은 15일입니다.
- 반납지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합니다.
- 자료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카드는 타인에서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발급도서관 : 구리시립도서관 (구리시립작은도서관)
*전화 : 031)550-2936(인창) 550-8325(토평)
550-2593(교문) 550-8999(갈매)
*홈페이지 : <http://www.gurilib.go.kr>

85mm×54mm(PVC카드190g/m²)

[관계 법령]

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관계 조례]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3.04.13] (일부개정) 2023.04.13 조례 제2101호

제1장 총칙 <신설 20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리시 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2023.4.13.>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및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를 등록원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등을 복사·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강료”란 도서관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8.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이하 “메이커스페이스”라 한다)란 디지털기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4차산업 시대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공유하며 협업하는 창의 제작 공간을 말한다.

9.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제2조의2(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0.12.4.]

제2장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0.12.4.>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29, 2021.9.28.>

1. 삭제 <2021.9.28.>
2. 삭제 <2021.9.28.>
3. 삭제 <2021.9.28.>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목변경, 개정 2020.12.4.>

제6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출제재 및 변상) ① 관장은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대출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관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12.4., 2021.9.28.>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 중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0.12.4.> <제목변경 2020.12.4.>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1.9.28.>

제11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의 행사(졸업식, 학예발표회, 토론회, 전시회 등)
3.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만, 시 관외단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9.28.>
4. 지역문화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5.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 다만, 시 관외 단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9.28.>
6.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8.>

③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4.>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창도서관 대강당을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별표 1및 별표 2를 적용한다.<개정 2015.12.29, 2021.9.28.>

② 문화강좌 등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은 수강자가 별도로 부담한다.<개정 2020.12.4., 2021.9.28.>

③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신설 2020.12.4.>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요청하는 때에는 「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또는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21.9.28.>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저작권」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본조신설 2020.12.4.]

제3장 구리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신설 2020.12.4., 2023.4.13.>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4.13.]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후단신설 2021.9.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28.>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또는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9.28.>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21조 삭 제 <2023.4.13.>

제22조 삭 제 <2020.12.4.>

제4장 독서문화진흥 [본장신설 2020.12.4.]

제22조의2(독서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 독서생활화에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 여건조성과 지원
3.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의 행사개최 지원
4.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자료 보급 및 독서모임의 육성지원
5. 메이커문화 등 지역문화 진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22조의3(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과 협력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의4 삭제 <2023.4.13.>

제5장 보칙 <신설 2020.12.4.>

제2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

[본조신설 2020.12.4.]

제25조 삭 제 <2023.4.13.>

제26조 삭 제 <2023.4.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404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④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 ④(생략)

부 칙 <조례 제1862호,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973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01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구리시 공공도서관

관 명칭 및 위치 중 갈매도서관을 개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4.13.>

구리시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인창도서관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90(인창동)
교문도서관	구리시 안골로30번길 45(교문동)
토평도서관	구리시 장자대로 140(토평동)
갈매도서관	구리시 갈매중앙로 80(갈매동) 4~6

[현행 규칙]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11.] (일부개정) 2023.08.11 규칙 제107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이란 구리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휴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설) 도서관에 두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5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21., 2021.4.1., 2023.4.13., 2023.8.11.>

1. 도서관별로 지정한 휴관일

가. 인창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다만, 꿈꾸는 공작소: 매주 월요일)

나. 토평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다. 방정환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라. 갈매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2. 삭제<2013.9.30>

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그 밖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

관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장서점검 및 도서정리, 시설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열람)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표를 발급받고 열람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금지
 2. 음주, 잡담, 수면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금지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금지
 4.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금지
 5. 무단집회, 열람실 이용 시 무단퇴관금지
 6. 도서관에서 인터넷 게임물, 채팅, 성인물 등 유해프로그램 접속 금지
 7.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 ② 관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관외대출) ① 관장은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자료대출은 회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임을 증명하고, 가족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경우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③ 한 사람이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도서는 연장신청 할 수 없다.

2. 비도서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한다.

3. 동일인이 동일자료를 다시 관외대출 신청시에는 반납 후 2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자료의 정리, 감사, 조사 등으로 인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⑥ 대출된 자료를 연체한 사람에게는 연체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중지한다.

⑦ 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의 대출권수를 확대할 수 있다.

1.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

2. 도서관 행사 참여자 중 성적우수자

3. 독서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9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대출회원 가입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개정 2014.8.21>

2.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4.8.21>

3.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회원등록원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다른 시·군 거주자에게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7일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6.6.21.>

④ 회원증 분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2.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외로 반출시킨 경우

3.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 관장이 회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면제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나. 관내 각급 학교의 행사
- 다.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시책관련 행사
- 라. 시의 행사를 민간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대행하는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비영리 공공단체가 공익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료 전액 반환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나.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삭제 <2021.4.1.>

제16조(변상조치) ①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사람이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열람인 또는 대출인에게 변상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상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변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같은 현품이나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하고, 해당 자료는 제적처리 한다.

④ 비매통지서의 변상은 해당 연도 한국출판통계를 참고하여 주제별 면당 평균가격에 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⑤ 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2021.11.12.>

제17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논문집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자료
5.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8조(문고의 설치) 관장은 독서진흥 및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학교, 직장, 단체, 공공기관 등에 문고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9조(회수불능 자료의 처리)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망, 행방불명, 무단전출, 해외이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0조제1항에 준하여 제적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20조 삭 제 <2023.4.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회원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8.21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92호, 2016.1.28. 구리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규칙 제905호, 201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55호, 201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99호, 2020.6.1.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 <규칙 제1023호, 202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47호, 2021.11.12. 구리시 예산 및 기금
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1070호, 2023.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 1 제4호의 갈매도서관은 개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78호, 2023.8.11.>
이 규칙은 교문도서관의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 공람 공고

1. 경기도고시 제2010-158호(2010.05.11.)호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된 구리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구리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구 리 시 장

가. 공람기간 : 2023. 09. 27. ~ 2023. 10. 16.(14일이상)

나. 공람장소 : 구리시청 별관 4층 균형개발과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관계도서 공람

라. 의견서 제출장소 : 구리시청 별관 4층 균형개발과

※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을 인정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인정
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역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명 칭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구리시 인창동 289-29번지 일원
- 면 적 : 50,487m²[주택단지 35,423m², 기반시설 15,064m²(도로 13,435m², 공원 1,629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명 칭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구리시 수택천로33번길 25, 3층

○ 대 표 자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건우

○ 대표자의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153번길 39, 3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8. 4. 3.

6) 시 행 자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리시 수택천로33번길 25, 3층】

7) 변경 내용

- C2블럭 건축계획 변경 : 관계도서 참조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 람 의 견 서

사 업 명	주택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리시 인창동 289-29번지 일원)			
공람기간	2023. 09. 27. ~ 2023. 10. 16.			
대 상 물건지	건 물			
	토 지			
의 견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내 용>				